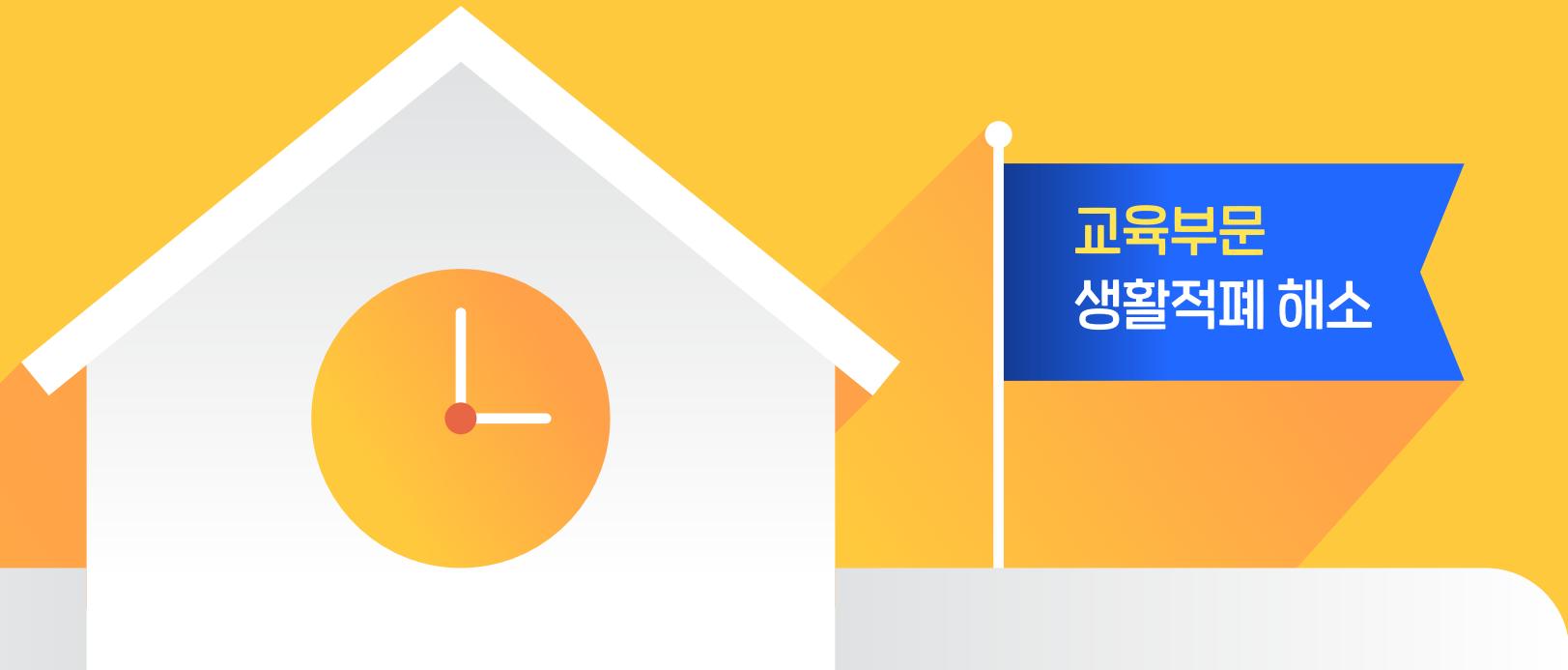




국민권익위원회

Anti-Corruption &
Civil Rights Commission



'유치원 3법' 통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('20.1.13.)



생활적폐대책협의회

사립유치원의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.

사립학교법

유치원 교비회계의
교육 목적 외 사용
금지의무 신설



유아교육법

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
시스템(에듀파인) 사용에
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



학교급식법

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
유치원 포함



사립학교법 개정

:



-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 겸직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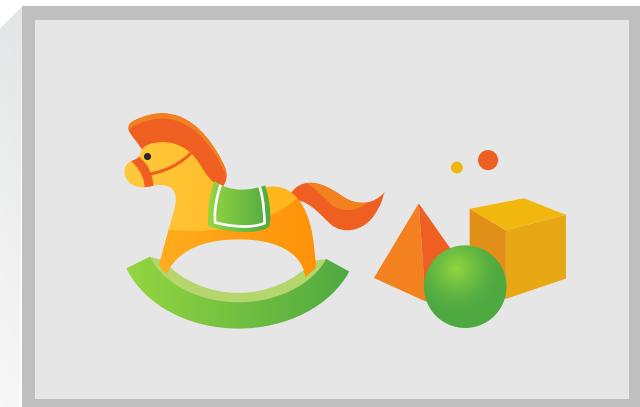
이사장(징계권자) = 유치원장(징계대상)이 되는 ‘셀프징계’ 방지



- 교비회계의 수입재산은 교육 목적 외 사용 불가

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
2천만원 이하의 벌금

유아교육법 개정



- 마약중독, 정신질환, 아동학대 전과자는 유치원 설립·경영 불가



-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“에듀파인” 사용하도록 명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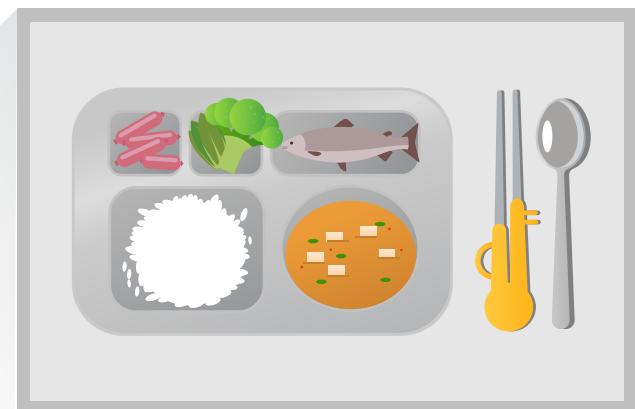
-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유아교육법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공표



-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한 경우 반환명령 가능



학교급식법 개정



- **유치원 급식을 위생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대하여 「학교급식법」 적용 대상에 포함**
급식시설·설비, 식재료 등 위생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인력배치, 영양 등
유치원 급식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





상담

국민콜110 또는 부패·공익신고전화 1398

교육부 민원 콜센터

(02-6222-6060)



신고



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

청렴포털(clean.go.kr)

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



국민권익위원회

Anti-Corruption &
Civil Rights Commission